

재검사명령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항목별		착오율
1. 연근착오	1개년근 착오	20.0% 이상
	2개년근 이상 착오	10.0% 이상
2. 등급착오	1개등급 착오	20.0% 이상
	2개등급 이상 착오	10.0% 이상
3. 편급착오		30.0% 이상
4. 수분착오		2.0% 이상 착오가 20.0% 이상
5. 중량착오		부족량 2.0% 이상